

변경대비표

1. 대상약관

- 수익증권저축약관

2. 시행일 : 2017년 9월 4일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
4. 변경 대비표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제4조(저축계약의 성립)	제4조(저축계약의 성립)	
<p>① 저축계약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신청과 저축금을 받아 수익증권저축통장(수익증권저축증서 및 거래용카드를 포함한다. 이하 “저축통장”이라 한다)을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② ~ ③ (생략)</p>	<p>① 저축계약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신청과 저축금을 받아 수익증권저축통장(수익증권저축증서 및 거래용카드를 포함한다. 이하 “저축통장”이라 한다)을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. 다만 무통장 거래 등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② ~ ③ (생략)</p>	<p>종이통장 발행 관행 혁신방안 2단계 시행(2017.9월)에 따른 개정</p>
(신설)	<부칙>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.	